

제12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 ① 사랑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수급자와 기관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② 등외자는 양 당사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③ 위 2항의 등급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전파가능할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장기입원이 필요로 할 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조 (계약당사자의 권리 · 의무)

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에서 정한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인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등의 제공 의무

③ 신원인수인(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기관의 협약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④ 신원인수인(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⑤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3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⑤ 기타 맞춤형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제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등급별 이용료 산정표를 별도로 작성해 시설내 게시 및 계약자안내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1. 시설급여 인상내역

(단위 : 원)

등급	2025년일일수가	본인부담금 구 분	28일	30일	31일
1등급	90,450	경 감(08%)	202,600	217,080	224,310
		경 감(12%)	303,910	325,620	336,470
		일 반(20%)	506,520	542,700	560,790
2등급	83,910	경 감(08%)	187,950	201,380	208,090
		경 감(12%)	281,930	302,070	312,140
		일 반(20%)	469,890	503,460	520,240
3~5등급	79,240	경 감(08%)	177,490	190,170	196,510
		경 감(12%)	266,240	285,260	294,770
		일 반(20%)	443,740	475,440	491,280

2. 비급여(식비, 간식비등)

(단위 : 원)

구 분	내 용(1일)	28일	30일	31일
식 비	3,000*3회=9,000	280,000	300,000	310,000
간식비	1,000*1회			
경관식	3,600*3회	313,200	324,000	334,800
이.미용비	부담금없음			
촉탁의사비용	8%-초진 1,470원	12%-초진 2,200원	20%-초진 3,680원	
	재진 1,050원	재진 1,570원	재진 2,630원	
상급병실료	200,000(1개월)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식간식비는 지자체에서 전액지원합니다.				

3.본인부담금+비급여(식비,간식비등) = 등급별월납입액

(단위 : 원)

구분		경감 8%	경감 12%	일반 20%	비급여 (식비,간식비등)	본인부담금 비급여포함 8%	본인부담금 비급여포함 12%	본인부담금 비급여포함 20%
1등급 90,450	28일	202,600	303,910	506,520	(28일) 280,000	482,600	583,910	786,520
	30일	217,080	325,620	542,700	(30일) 300,000	517,080	625,620	842,700
	31일	224,310	336,470	560,790	(31일) 310,000	534,310	646,470	870,790
2등급 83,910	28일	187,950	281,930	469,890	(28일) 280,000	467,950	561,930	749,890
	30일	201,380	302,070	503,460	(30일) 300,000	501,380	602,070	803,460
	31일	208,090	312,140	520,240	(31일) 310,000	518,090	622,140	830,240
3,4,5 등급 79,240	28일	177,490	266,240	443,740	(28일) 280,000	457,490	546,240	723,740
	30일	190,170	285,260	475,440	(30일) 300,000	490,170	585,260	775,440
	31일	196,510	294,770	491,280	(31일) 310,000	506,510	604,770	801,280